

의안번호	2204051
의 퇴 인	송옥주의원
회 답 일	2024.11.07.
추계번호	24D3850

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조제1호가목(정의) 등 신설	이재민의 정의에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(형제·자매 및 친인척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	의무규정
2	안 제4조의3제2항(임시주거시설 제공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재민등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. 1. 숙박비 2. 식사비 3. 구호물품 구입비 4. 그 밖에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의 체류지원을 위해 필요한 비용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조제1호가목(정의) 등 신설	현행법 시행령에 있는 규정을 상향 입법하면서 현행법보다 가족 ¹⁾ 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내용으로 추가제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
2	안 제4조의3제2항(임시주거시설 제공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1) 현행법 시행령 제1조의2는 이재민에 해당하는 사람을 ‘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’으로 규정하고 있음

2. 상세 사유

□ 임시주거시설 제공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(안 제4조의3제2항 신설)

-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재민등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숙박비, 식사비, 구호물품 구입비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임시주거시설 제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별 기존 지원 제도의 확대 여부 및 범위, 지원 항목별 확대 규모 및 평균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 - － 행정안전부에 따르면, 「재해구호기금 집행지침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이재민에게 임시주거시설 제공을 위한 숙박비 지원 등을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, 기본적으로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고 있음
 - － 다만,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 상황에 따라 숙박비를 지원하는 최대 일수, 구호물품의 종류 등에 차이가 있으나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임시주거시설 제공을 위한 지원 현황은 조사된 바 없음
 - － 참고로, 행정안전부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주택 전과 등의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제공되는 임시조립주택 950동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였고, 2024년 11월 현재 254동(주로 산불피해 이재민)을 제공하고 있음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